

第114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1年 9月 5日(水) 11時00分

議事日程(第2次 本會議)

1.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附議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吳弼根議員 外 3人 發議)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面

(11時00分 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吳弼根議員 外 3人 發議)
2.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運營委員會 鄭泰淳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鄭泰淳 運營委員會 委員長 鄭泰淳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金以煥 議長님! 金正大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盧張鐸 副區廳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종로구의회 제3대 의회 제3기 운영위원회 洪起瑞 前 委

員長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도 지난 1년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먼저 상임위원회 정수 개정 규정은 우리 구의회에 두는 3개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각각 9인으로 규정하고 달리 단서규정을 두지 않아서 의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위원회 정수가 즉시 조례 불일치 사례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항이며, 두번째 상임위원회의 임기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상임위원회의 정수 규정에 있어서 시민행정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의 경우는 현재의 위원 정수 9인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 정수와 조례 정수가 즉시 불일치되는 맹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원 구성 후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궐선거로 충원이 있기까지는 결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수를 그 위원회의 정수로 하도록 단서규정을 설치하는 개정(안)이며, (안) 제5조의 각 상임위원

의 임기규정은 현재 1년 임기규정을 2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부칙에서 임기연장 규정은 제4대 의회 개원시인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여 현재 상임위원 임기규정과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심사 결과 제2조의 위원회 정수 개정(안)은 의원의 궐원에 따른 탄력적인 단서규정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심의되었으나, (안) 제5조의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규정은 현재 1년 임기가 잦은 선거로 인한 선거후유증이 의정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와 전문성 제고에 다소 미흡하다는 점과 위원회가 없는 금천구를 제외한 서울의 모든 구가 2년 임기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2년 임기로 합이 타당하다고 하는 다수론과, 현행 1년의 임기규정도 위원장 담임 기회가 증대되고 구정을 순환적으로 두루 섭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1대 때 특별히 타구와 차별되게 우리 구가 채택한 제도로 존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어 표결로 원안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運營委員會)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以煥 鄭泰淳 運營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財務建設委員會 安載弘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建設委員長 安載弘 안녕하십니까? 財務建設委員會 委員長 安載弘입니다. 평소 중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金以煥 議長님! 金正大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盧張鐸 副區廳長님

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렇게 무덤고 지루하기만 하였던 여름도 이제는 지나가고 절기상으로 처서(處暑)가 지나서 제법 한기까지 느끼게 하는 이때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많은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金福同 委員長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1년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설치 목적인 능률성과 전문성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보다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모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0년 10월 20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개정과 일부 규정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현 중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총 61개 조문 중에서 17개 조문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그 중 3개 조문은 신설규정이며 3개 조문은 기존 제도의 변경이고 나머지 11개 조문은 자구수정이 가하여지는 상당히 복잡한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신설규정, 변경규정, 자구수정 순으로 내용을 간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내용은 공공시설 위탁관리 전대제의 도입입니다. 이 제도는 공사하도급과 같이 시설수탁자가 수탁시설을 다시 전대하는 것을 합법화한 것으로 우리 구 팔각정의 경우 수탁받은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전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자와 전대자간 사용자 분쟁을 해소하였습니다. 두번째 신설제도는 공유재산의 임대시에 전세제도의 도입입니다. 이는 경영수의 구조물이나 복합공공시설 등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부득이한 경우 임대료에 상응한 이자가 확보되도록 이자액을 역산한 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하여 임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번째로 공유재산의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제도의 도입입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준용한 개정입니다.

다음은 내용변경 3건은 첫번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의 변경입니다. 현재는 도로, 하천부지 등 용도폐지 시에 10평 이상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100평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며, 두번째로 공유지 내 사유건물 대부분 산출시 상가와 주택의 대부분 차등제를 채택하였으며, 세번째는 공유재산 은닉신고 포상금 지급금지 대상에 관계공무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 제한규정이 신설되어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구수정이나 법률 개·폐에 따른 조문 수정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공유재산심의회의 용도폐지 심의대상을 10평에서 100평으로 일시에 대폭 확대하는 것은 100평 미만 공공용지가 다수인 우리 구의 입장에서 과도한 상향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용도폐지 재산이 향후 매각 시에는 평수에 상관없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제도적 보완책이 있다는 답변이 있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다음으로 공공시설 위탁운영의 전대 제도에서 민간인 신분인 수탁자가 전대자에게 사용료나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도록 급변 조례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상위법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즉, 공공시설의 사용료나 관리비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부과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간인 신분인 수탁자가 전대자에게 부과 고지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개별위임이 있어야 하는 사안이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84의 2는 전대를 불법에서 합법화만 하고 있지 사용료 부과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위법 개정 취지는 종전 전대를 불법화하고 있음으로 해서 전대를 원인으로 한 사인간의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며, 불법인 전대의 합법화 개정으로 이제 그 맹점이 치유되어 사인간의 계약으로도 사용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 징수 근거를 두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에 수탁자와 전대자간 사용료 고지규정을 둘 필요도 없고 적법성도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서울시조례에서도 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답변이 있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구수정을 위한 개정(안)들은 개정 조문별 축조 심의를 통하여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財務建設委員會)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以煥 安載弘 財務建設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수해 원인조사와 대책 마련 및 복구사항 점검 그리고 공사 중인 세검1교 개수 및 하천 준설 현장시찰 등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정활동을 하여 소정의 성과를 거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1時18分 閉會)

○出席議員數 18人

金以煥	鄭泰淳	李憲九	吳錦南
千相旭	玄壽漢	安載弘	丁炳煥
劉燦鍾	李炯述	洪承台	金福同
朴鍾植	吳弼根	洪起瑞	李東奎
金正大	宣相善		

○出席關係公務員

副 區 廳 長	盧張鐸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財 務 局 長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保 健 所 長	李星世